

通 信 秘 密 保 護 法 案 (代案)

議 案	
番 號	

提案年月日 : 1993. 12.

提 案 者 : 政治關係法審議
特 別 委 員 長

一. 代案의 提案經緯

1993年5月12日 朴相千·洪思德·李沅衡·鄭祥容·鄭均桓·姜昌成·崔斗煥·柳寅泰議員外 86人이 發議한 通信秘密保護法案과 1993年7月7日 申相式·朴嬉太·梁昶植·姜信玉·南在斗·金榮駒議員外 16人이 發議한 通信秘密保護法案을 審查한 結果, 第165回國會(定期會)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 第3次委員會(1993年12月1日)에서 이를 각각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委員會代案을 提案하기로 함.

二. 代案의 提案理由

國民의 通信 및 對話의 秘密과 自由를 保障하기 위하여 電氣通信의 監聽과 郵便物의 檢閱 등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法的節次를 거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를 私生活의 秘密과 通信의 自由가 구현되는 자유로운 民主社會로 진전시키기 위함임.

三. 代案의 主要骨子

1. 누구든지 이 法 · 刑事訴訟法 또는 軍事法院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제한조치, 즉 郵便物의 檢閱이나 電氣通信의 監聽 또는 公開되지 아니한 他 인간 對話의 녹음 · 聽取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還付郵便物의 處理 · 輸出入郵便物의 檢查등에 관하여는 당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案 第3條)
2. 犯罪搜查를 위한 郵便物의 檢閱과 電氣通信의 監聽등 通信制限措置는 이 法에 열거된 중요한 犯罪를 計劃 또는 實行하고 있거나 實行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理由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犯罪의 實行을 저지하거나 犯人の 체포 또는 證據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도록 함.(案 第5條)
3. 犯罪搜查를 위한 通信制限措置는 檢事(軍檢察官 포함)가 通信制限措置의 種類 · 그 目的 · 對象과 範圍 · 期間 및 청구이유를 기재한 청구서에 疏明자료를 첨부하여 地方法院 또는 支院(普通軍事法院 포함)의 許可를 받도록 함(案 第6條)
4. 國家安保를 위한 通信制限措置는 國家安全保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情報蒐集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 通信의一方

또는 雙方當事者가 內國人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情報搜查機關의長이 檢事를 거쳐 高等法院 首席部長判事의 許可를 받아 할 수 있으며, 다만,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國家, 反國家活動의 혐의가 있는 外國의 機關·團體와 外國人, 大韓民國의 統治權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韓半島내의 集團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奉下團體의 구성원의 通信인 때에는 情報搜查機關의 長이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 通信制限措置를 할 수 있도록 함.(案 第7條)

5. 犯罪搜查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期間은 3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3月의 범위내에서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國家安保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경우에는 6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6月의 범위내에서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案 第6條第7項, 第7條第3項)

6. 檢事·司法警察官 또는 情報搜查機關의 長은 法院의 許可節次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許可없이 通信制限措置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48時間이내에 法院의 許可를 받도록 하며, 情報搜查機關의 長은 大統領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長官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48時間이내에 大統領의 승인을 얻도록 함

(案 第8條)

7. 國家機關외에 監聽設備를 製造·輸入·販賣·配布·소지·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廣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遷信部長官의 認可를 받도록 함(案 第10條)

8. 通信制限措置로 취득한 資料는 犯罪의 搜查·訴追 또는 그 犯罪의

豫防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그 犯罪로 인한 懲戒節次에 사용하는

경우, 通信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損害賠償訴訟에서 사용하는 경우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案 第11條)

9. 누구든지 公開되지 아니한 他 인간의 對話를 녹음하거나 電子裝置 또

는 機械的 수단을 이용하여 聽取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녹음 또는

聽取할 경우에는 通信制限措置의 許可規定을 適用하도록 함(案 第14條)

10.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대화비

밀의 침해를 한 자와 그 취득한 通信등의 内容을 公開하거나 누설한

者에 대하여는 7年이하의 懲役에 처하도록 하는등 罰則規定을 둠

(案 第16條 내지 第18條)

11. 臨時郵便團東法을 廢止 함(案 附則 第2項)

12. 經過措置로서, 이 法 施行 당시 監聽設備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인가대상자는 이 法 施行日후 3월이내에 認可를 받아야 하며, 이를 違反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도록 함(案 附則 第3項).

한국

法律 第 號

通信秘密保護法案

第1條(目的) 이 法은 通信 및 對話의 秘密과 자유에 대한 制限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法的 節次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通信秘密을 보호하고 通信의 自由를 신장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通信"이라 함은 郵便物 및 電氣通信을 말한다.
2. "郵便物"이라 함은 郵便法에 의한 通常郵便物과 小包郵便物을 말한다.
3. "電氣通信"이라 함은 有線·無線·光線 및 기타의 電磁的 方式에 의하여 모든 種類의 音響·文言·符號 또는 影像을 送信하거나 受信하는 것을 말한다.
4. "當事者"라 함은 郵便物의 發送人과 受取人, 電氣通信의 送信人과 受信人을 말한다.
5. "內國人"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統治權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地域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고 있는 大韓民國國民을 말한다.
6. "檢閱"이라 함은 郵便物에 대하여 當事者の 同意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나 기타의 方法으로 그 내용을 知得 또는 採錄하거나 留置하는 것을 말한다.

7. "監聽"이라 함은 電氣通信에 대하여 當事者의 同意없이 電子裝置·機械裝置등을 사용하여 通信의 音響·文言·符號·影像을 聽取·共讀하여 그 내용을 知得 또는 採錄하거나 電氣通信의 送·受信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監聽設備"라 함은 對話 또는 電氣通信의 監聽에 사용될 수 있는 電子裝置·機械裝置 기타 設備를 말한다. 다만, 電氣通信 器機·機具 또는 그 部品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聽覺矯正을 위한 补聽器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保護) 누구든지 이 法과 刑事訴訟法 또는 軍事法院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郵便物의 檢閱 또는 電氣通信의 監聽을 하거나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간의 對話を 녹음 또는 聽取하지 못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당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還付郵便物等의 處理: 郵便法 第28條·第32條·第35條·第36條등의 規定에 의하여 爆發物등 郵便禁制品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小包郵

便物(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을 개피하는 경우, 受取人에게
配達할 수 없거나 受取人이 受領을 거부한 郵便物을 發送人에게 還付
하는 경우, 發送人の 住所·姓名이 漏落된 郵便物로서 受取人이 受取
를 거부하여 還付하는 때에 그 住所·姓名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還付不能郵便物을 처리하는 경우

2. 輸出入郵便物에 대한 檢查: 關稅法 第150條·第151條등의 規定에 의
한 信書외의 郵便物에 대한 通關檢查 節次

3. 拘束 또는 服役중인 사람에 대한 通信: 刑事訴訟法 第91條, 軍事法
院法 第131條, 行刑法 第18條·第19條 및 軍行刑法 第15條·第16條
등의 規定에 의한 拘束 또는 服役중인 사람에 대한 通信의 관리

4. 破産者에 대한 通信: 破產法 第180條의 規定에 의하여 破産者에게
보내온 通信을 破産管財人이 受領하는 경우

5. 混信除去등을 위한 電波監視: 電波法 第63條의2의 規定에 의한 混信
除去등 電波秩序維持를 위한 電波監視의 경우

第4條(不法檢閱에 의한 郵便物의 내용과 不法監聽에 의한 電氣通信內容의
證據사용 禁止) 第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不法檢閱에 의하여 취득한
郵便物이나 그 내용 및 不法監聽에 의하여 知得 또는 採錄된 電氣通信

의 내용은 裁判 또는 懲戒節次에서 證據로 사용할 수 없다.

第5條(犯罪搜查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要件) ①郵便物의 檢閱과 電氣
通信의 監聽(이하 "通信制限措置"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犯罪를 計劃
또는 實行하고 있거나 實行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
른 방법으로는 그 犯罪의 實行을 저지하거나 犯人の 逮捕 또는 證據의
蒐集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1. 刑法 第2編中 第1章 內亂의 罪, 第2章 外患의 罪, 第4章 國交에
關한 罪, 第5章 公安을 害하는 罪, 第6章 爆發物에 關한 罪, 第7章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 第9章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第13章 放
火와 失火의 罪중 第164條 내지 第167條 · 第172條 내지 第175條의
罪, 第14章 溢水와 水利에 關한 罪중 第177條 내지 第180條 · 第182條
· 第183條의 罪, 第15章 交通妨害의 罪중 第185條 내지 第188條 ·
第190條의 罪, 第16章 飲用水에 關한 罪, 第17章 阿片에 關한 罪,
第18章 通貨에 關한 罪, 第19章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關한 罪,
第24章 殺人の 罪, 第29條 逮捕와 監禁의 罪, 第30章 脅迫의 罪,
第31章 略取와 誘引의 罪, 第32章 貞操에 關한 罪, 第37章 權利行事
를 妨害하는 罪, 第38章 竊盜와 強盜의 罪, 第39章 詐欺와 恐喝의

罪중 第350條의 罪

2. 軍刑法 第2編중 第1章 叛亂의 罪, 第2章 利敵의 罪, 第3章 指揮權濫用의 罪, 第4章 指揮官의 降服과 逃避의 罪, 第5章 守所離脫의 罪, 第7章 軍務怠慢의 罪중 第42條의 罪, 第8章 抗命의 罪, 第9章 暴行·脅迫·傷害와 殺人의 罪, 第11章 軍用物에 關한 罪, 第12章 違令의 罪중 第78條·第80條·第81條의 罪
3. 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犯罪
4. 軍事機密保護法에 規定된 犯罪
5. 軍事施設保護法에 規定된 犯罪
6. 麻藥法에 規定된 犯罪
7.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에 規定된 犯罪
8. 大麻管理法에 規定된 犯罪
9.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法律에 規定된 犯罪
10.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法律에 規定된 犯罪
11. 第1號와 第2號의 罪에 대한 加重處罰을 規定하는 法律에 위반하는 犯罪

②通信制限措置는 第1項의 要件에 해당하는 者가 發送·受取하거나 送·

受信하는 特定한 郵便物이나 電氣通信 또는 그 該當者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發送·受取하거나 送·受信하는 郵便物이나 電氣通信을 對象으로 許可될 수 있다.

第6條(犯罪搜查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節次) ①檢事(軍檢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第5條第1項의 要件이 구비된 경우에는 法院(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通信制限措置를 許可하여 줄 것을請求할 수 있다.

②司法警察官(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第5條第1項의 要件이 구비된 경우에는 檢事에 대하여 通信制限措置에 대한 許可를 申請하고, 檢事는 法院에 대하여 그 許可를請求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通信制限措置請求事件의 管轄法院은 그 制限措置를 받을 通信當事者の 雙方 또는一方의 住所地 또는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 또는 支院(普通軍事法院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通信制限措置請求는 필요한 通信制限措置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당해 通信制限措置가 第5條第1項의 許可要件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請求理由를 기재한 書面(이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請求理由에 대한 疏明資料를添附하여야 한다.

⑤法院은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通信制限措置를 許可하고 이를 증명하는 書類(이하 "許可書"라 한다)를 請求人에게 발부한다.

⑥第5項의 許可書에는 通信制限措置의 종류·그 目的·대상·範圍 및 기간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通信制限措置의 기간은 3月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第5條第1項의 許可要件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節次에 따라 3月의 범위내에서 通信制限措置期間의 연장을 請求할 수 있다.

⑧法院은 請求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請求를 기각하고 이를 請求人에게 통지한다.

第7條(國家安保를 위한 通信制限措置)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搜查機關의 長(이하 "情報搜查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國家安全保障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情報蒐集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通信制限措置를 할 수 있다.

1. 通信의一方 또는 雙方當事者가 內國人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高等法院 首席部長判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2.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國家, 反國家活動의 혐의가 있는 外國의 機關·團體와 外國人, 大韓民國의 統治權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韓半

島내의 集團이나 外國에 소재하는 그 奉下團體의 構成員의 通信인 때
에는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信制限措置의 기간은 6月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第1項의 要件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高等法院 首席部長判事의 許
可 또는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 6月의 범위안에서 通信制限措置의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③第6條第2項 · 第4項 내지 第6項 및 第8項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관하여 이를 適用한다. 이 경우 "司法警察官(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情報捜査機關의 長"으로, "法院"은 "高等法院 首
席部長判事"로, "第5條第1項"은 "第7條第1項第1號"로 한다.

④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의 승인에 관한 節次등 필요한 사항
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通信制限措置에 관한 緊急處分) ①檢事와 司法警察官이 第5條第1項
의 요건을 구비한 者에 대하여 第6條에 規定하는 節次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및 情報捜査機關의 長이 第7條第1項第1號의 요
건을 구비한 者에 대하여 第7條第1項 및 第3項에 規定하는 節次를 거
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없이 通信制限

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通信制限措置를 執行한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第6條 및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에 따라 法院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法院의 許可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通信制限措置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情報搜查機關의 長은 第7條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通信制限措置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國家安全保障에 대한 危害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長官 (國家安全企劃部長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通信制限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通信制限措置를 執行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大統領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通信制限措置를 중지하여야 한다.

第9條(通信制限措置의 執行) ①第6條 내지 第8條의 通信制限措置는 이를 請求 또는 申請한 檢事·司法警察官 또는 情報搜查機關의 長이 執行한다. 이 경우 電信官署 기타 관련 機關등에 그 執行을 委託할 수 있다.
②通信制限措置를 執行하는 者와 이를 委託받은 者는 당해 通信制限措置를 청구한 目的과 그 執行日時 및 대상을 執行台帳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10條(監聽設備에 대한 認可機關과 認可節次) ①監聽設備를 製造·輸入·

販賣·配布·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廣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遞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國家機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遞信部長官이 第1項의 認可를 하는 경우에는 國務總理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遞信部長官은 第1項의 認可를 하는 경우에는 認可申請者, 認可年月日, 認可된 監聽設備의 종류와 數量등 필요한 사항을 台帳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認可를 받아 監聽設備를 製造·輸入·販賣·配布·소지 또는 사용하는 者는 認可年月日, 認可된 監聽設備의 종류와 數量, 備置場所등 필요한 사항을 台帳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備品으로서 그 職務遂行에 제공되는 監聽設備는 該當機關의 備品臺帳에 기재한다.

⑤第1項의 認可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非公開의 原則) ①누구든지 第6條 내지 第10條, 第14條에 規定된

通信制限措置등으로 취득한 内容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

우외에는 이를 다른 機關 또는 外部에 公開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②通信制限措置의 許可過程이나 許可與否·許可內容등은 外部에 公開하거나 漏泄할 수 없으며, 그 秘密維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12條(通信制限措置로 취득한 資料의 사용 제한) 第9條의 規定에 의한 通信制限措置의 執行으로 인하여 취득된 郵便物 또는 그 내용과 電氣通信의 内容은 다음 各號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通信制限措置의 目的이 된 第5條第1項에 規定된 犯罪나 이와 관련되는 犯罪를 搜查·訴追하거나 그 犯罪를豫防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第1號의 犯罪로 인한懲戒節次에 사용하는 경우
3. 通信의 當事者가 제기하는 損害賠償訴訟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第13條(電話脅迫등의 방지를 위한 제한) 電話에 의한 暴言·脅迫·戲弄등으로부터 受信人을 보호하기 위하여 電氣通信事業法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受信人の 요구가 있는 때

에는 送信人의 電話番號를 受信人에게 알려줄 수 있다.

第14條(他人의 對話秘密 侵害禁止) ① 누구든지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電子裝置 또는 機械的 수단을 이용하여 聽取할 수 없다.

② 第4條 내지 第9條 및 第12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녹음 또는 聽取에 관하여 이를 適用한다.

第15條(보고) 國會의 常任委員會와 國政監查委員會·國政調查委員會는 필요 한 경우 특정한 通信制限措置, 監聽設備에 대한 認可內譯등에 관하여 法院行政處長, 通信制限措置를 請求하거나 申請한 機關의 長이나 이를 執行한 機關의 長 또는 遞信部長官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第16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1. 第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郵便物의 檢閱, 電氣通信의 監聽 또는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간의 對話を 녹음 또는 聽取하거나 그 取得한 通信 또는 對話의 内容을 公開하거나 漏泄한 者.
2. 第11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通信의 内容 또는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間의 對話의 内容을 公開하거나 漏泄한 者.

第17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

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9條第2項(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規定에 違反하여 通信制限措置의 請求目的과 執行日時 및 대상을
執行台帳에 기재하지 아니한 者

2.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監聽設備을
製造·輸入·販賣·配布·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廣告를 한 者.

3. 第10條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監聽設備의 認可台帳등
을 作成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者

第18條(未遂犯) 第16條 및 第17條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廢止法律) 臨時郵便團東法은 이를 廢止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監聽設備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認可對象者는 이 法 施行로부터 3月이내에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아 台帳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違反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7條第2號를 적용한다.

공백